정보보호 서약서

(외부자용)

정보보호 관련 법률

의료법 제19조의 1항 (정보누설의 금지)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3조의 3항 (전자의무기록)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법 제87조의 2항 (벌칙) : 제23조 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인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병원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병원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병원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병원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병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병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병원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 후에는 즉시 병원에 전부 반환한다.
8. 기타 병원의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소 속 :

연락처 (휴대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 귀하